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 서 울 행 정 법 원

## 제 2 부

## 판 결

사 건 2016구합9923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거부결정 취소 등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0. [redacted] [redacted]구 B 외 2필지 지상 C호텔(연면적 21,133.3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건축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등 합계액 16,319,367,892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인 시가표준액 22,084,329,8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18,361,230원, 지방교육세 35,334,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168,650원 등 합계 697,864,800원을 원고에게 부과 ·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7.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7.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호텔의 공사비용인 16,319,367,892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취득세 161,922,5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1.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의 장부이고 첨부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는 데 지출한 공사비용 등 16,319,367,892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가격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세금계산서 및 법인장부는 피고가 실제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관련 장부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4. 11.경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작성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공사내역 | 금액 | 비고 |
|---|---|---|
| 도급공사금액<br>(부가가치세 제외) | 11,713,485,000 | 하이스트종합건설(주) : 4,661,872,728<br>D(주) : 7,051,612,272 |
| 설계비 및 감리비<br>(부가가치세 제외) | 628,180,000 | 서당건축 : 378,180,000<br>E : 250,000,000 |
| 부대공사 비용 | 1,644,755,271 | 369CCTV 외 직접공사 지출비용 |
| 건축관련 조세 및 공과금 | 17,348,700 | 도로점용료 : 17,109,200<br>면허세 : 239,500 |
| 건축주 원인자 부담금 | 236,544,780 | 상수도 인입비 : 40,490,030<br>하수도 부담금 : 180,890,350<br>가스 : 15,164,400 |
| 건설자금이자 | 1,270,357,736 | 지급보증료 : 140,116,570 |
| 기타 신축부대비용 | 665,479,709 | 토질검사 : 3,000,000<br>구조계산 용역비 : 29,700,000<br>변호사 선임료 : 175,779,909<br>아파트 보상비 : 452,000,000<br>흙막이감리용역비 : 5,000,000 |
| 공사현장 인건비 | 143,216,696 | |
| 소계 | 16,319,367,892 |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2) 원고와 [redacted]건설 주식회사(이하 '[redacted]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2012. 5. 21.경 작성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
|---|
| 1. 공사명 : 서울 구로구 F 외 5필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 2. 대지위치 : 서울 구로구 F 외 5필지 |
| 3. 공사기간 |
| 착공 : 2012. 5. 29. |
| 준공 : 2014. 5. 31. |
| 4. 도급금액 : 9,768,000,000원 |
| 공급가액 : 9,107,325,000원 |
| 부가가치세액 : 661,500,000원 |
| 6.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월 1회 |
| 7.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 8. 하자보수보증금율 : 3% |
| 9. 지체상금율 : 1000/1 |
| 2012. 5. 21. |
| 건축주 : 원고 |
| 시공자 : 하이스트, D |

3) 원고와 D 사이에 2014. 5. 9.경 작성된 건축공사(인테리어) 추가 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공사(인테리어) 추가 도급 계약서 |
|---|
| 1. 공사명 : 서울 구로구 F 외 5필지 호텔 인테리어 등 추가 공사 |
| 2. 공사장소 : 서울 구로구 F 외 2필지 |
| 3. 공사기간 : 2014. 6. 15. ~ 2014. 12. 30. |
| 4. 도급금액 : 2,858,668,426원 |
| 공급가액 : 2,606,160,000원 |
| 부가가치세액 : 252,508,426원 |
| 5. 선금 : 없음 |
| 6.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월 1회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 |
|---|
| 7.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br>8. 하자보수보증금율 : 3%<br>10. 계약보증금 : 없음<br>2014. 5. 9.<br>도급인 : 원고<br>수급인 : D |

4) 원고와 D의 대표이사 G은 형제 관계이다.

5) 원고와 주식회사 [redacted]건축사 사무소(이하 [redacted]이라 한다) 사이에, 2012. 2. 1.경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설계에 관하여 대금 2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2. 5. 19.경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감리에 관하여 대금 85,800,000원으로 된 공사감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6) 원고와 H(E건축사 사무소) 사이에, 2014. 3.경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설계에 관하여 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감리에 관하여 대금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이 사건 호텔의 증축 및 용도변경 설계에 관하여 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등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법인장부에 관하여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제1호),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제2호)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 즉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법인장부와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나) 원고와 [redacted] 사이의 거래 관련

살피건대, 원고가 [redacted]와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redacted]로부터 2012. 1. 1. 부터 2014. 12. 31.까지 4,661,872,727원(2012년 650,301,497원, 2013년 4,021,176,026원, 2014년 -9,604,796원)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거래처 원장(갑 제5호증의 1), 이에 관한 공사비합계표(갑 제5호증의 3), [redacted]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4), [redacted]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2013. 12. 27.까지 14차례에 걸쳐 합계 5,126,871,52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6호증의 1)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redacted]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 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공사비합계표와 수취내역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원고와 하이스트 사이의 공사계약금액을 5,000,000,000원(공급가액 4,661,872,728원, 부가가치세 338,127,272원)으로 보더라도,[1] 갑 제3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redacted]에게 2012. 6. 15.부터 2013. 12. 27.까지 합계 5,126,871,52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redacted]에게 2012. 6. 15. 296,871,52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29. [redacted]로부터 286,000,000원을 다시 이체받았고, 2013. 9. 16. [redacted]에게 200,0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17. [redacted]로부터 100,000,000원을 다시 이체받았으며, 2013. 12. 27. [redacted]에게 700,000,000원을 입금한 후 [redacted]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2014. 1. 6. 100,000,000원을 각 다시 이체받아 합계 516,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그 외에

1) 원고와 하이스트, D 사이에 2012. 5. 21. 작성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의 도급금액은 9,768,000,000원(공급가액 9,107,325,000원, 부가가치세액 661,500,000원)이고, 원고와 D 사이에 2014. 5. 9. 작성된 건축공사(인테리어) 추가 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추가 공사의 도급금액은 2,858,668,426원(공급가액 2,606,160,000원, 부가가치세액 252,508,426원)인데, 원고가 제출한 공사비합계표에는 원고와 하이스트 사이의 공사계약 금액이 4,661,872,728원(면세 1,280,600,000원, 과세 3,381,272,728원)으로 되어 있고, 그 수취내역에는 50억 원(= 공사계약 금액 4,661,872,728원 + 부가가치세 338,127,272원)으로 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도 [redacted]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직후 D 또는 [redacted]의 다른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이체하였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그 공사금액과 지급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redacted]에게 금원을 송금한 직후 [redacted]로부터 상당 금원을 다시 반환받았으며(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신축자금 부족으로 [redacted]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금원의 입금 후 다른 계좌로 즉시 또는 단기간 이내에 대부분의 금원이 이체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처원장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거래처원장은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D과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7,051,528,017원(2012년 37,454,547원, 2014년 7,014,073,470원)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거래처 원장(갑 제5호증의 2), 이에 관한 공사비합계표(갑 제5호증의 3), D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5), D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4. 11. 18.까지 14차례에 걸쳐 합계 2,8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증 등과, 원고가 대출받아 D에 지급한 자료로 D이 2014. 1. 28. 600,000,000원, 2014. 2. 13. 1,270,000,000원을 각 입금받고, 2014. 9. 5. 2,999,825,000원을 대출금 지급으로 입금받은 내용의 통장거래내역(갑 제36호증의 2)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 등이 존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공사비합계표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원고와 D 사이의 공사계약금액을 7,051,528,017원(부가가치세 703,952,802원 별도)으로 보더라도,[2] 갑 제3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2012. 10. 11.부터 2014. 11. 18.까지 합계 2,8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D은 무통장으로 600,000,000원, 1,270,000,000원을 각 입금받고 대출금으로 2,999,825,000원을 입금받았으나, 2014. 2. 13. 1,27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해 3. 25.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4. 9. 5. 2,999,825,000원을 입금받은 후 원고에게 같은 달 6. 900,000,000원 및 같은 달 10. 232,127,400원을 각 이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D의 대표이사인 G은 원고의 동생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일 뿐 아니라, 위 금융거래내역은, 그 공사금액과 지급금액이 상이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이 D에게 입금된 후 곧바로 상당 금원이 원고에게 이체되었으며(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신축자금 부족으로 D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금원의 입금 후 다른 계좌로 즉시 또는 단기간 이내에 대부분의 금원이 이체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처원장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거래처원장은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기타 거래

2) 공사비합계표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의 공사계약 금액은 7,051,528,017원(면세 12,000,000원, 과세 7,039,528,017원)으로 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원고는 [redacted], D 이외의 나머지 거래에 관하여 별지 2 중 연번 3 내지 33 기재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중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은 일응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원장, 매출장 등 법인장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그 중 상당 부분이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호텔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 의한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는 세금계산서 및 법인장부는 피고가 실제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관련 장부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는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장부의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가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임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법인장부 등을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강동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별지 1**

##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별지 2

## 원고 제출서류

(단위 : 원)

| 연번 | 거래처명 | 금액 | 제출서류 | 서증목록 | 금융거래내역 금액 | 서증목록 |
|---|---|---|---|---|---|---|
| 1 | 하이스트 | 4,661,872,728 | 거래처원장 | 갑5-1 | 5,126,871,520 | 갑36-1 |
| | | | 거래사실확인서 | 갑5-4 | | |
| 2 | D | 7,051,528,017 | 거래처원장 | 갑5-2 | 7,759,825,000 | 갑36-2 |
| | | | 거래사실확인서 | 갑5-5 | | |
| 3 | 서당 | 388,454,544 | 설계비지출내역(매입매출장 255,727,272원 포함) | 갑6-1내지4 | 409,300,000 | 갑36-3 |
| 4 | (주)수정디앤씨 | 39,226,000 | 거래처별거래확인서 | 갑7-1 | 39,160,000 | 갑36-4 |
| | | | 거래사실확인서 | 갑7-2 | | |
| | | | 전표조회 | 갑7-3 | | |
| | | | 거래사실확인서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5 | 369시스템㈜ | 33,000,000 | 세금계산서 | 갑8-1 | 33,000,000 | 갑36-5 |
| | | | 거래사실확인서 | 갑8-2 | | |
| | | | 전표조회 | 갑8-3 | | |
| | | | 거래사실확인서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6 | 동부대우전자서비스㈜ | 183,874,540 | 판매상세내역조회 | 갑9-1 | 201,261,994 | 갑36-6 |
| | | | 전표조회 | 갑9-2 | | |
| | |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7 | 롯데알미늄㈜ | 139,700,000 |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 갑10-1,2 | 139,700,000 | 갑36-7 |
| | | | 거래사실확인서 | 갑10-3 | | |
| | | | 전표조회 | 갑10-4 | | |
| | | | 거래사실확인서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8 | 인천세관 | 150,154,347 | 세금계산서 | 갑11-1,2 | 159,561,513 | 갑36-8 |
| 9 | 바이맥스인터내셔널㈜ | 32,131,000 | 거래처원장 | 갑12 | 45,760,000 | 갑36-9 |
| 10 | ㈜산하정보기술 | 59,132,337 | 매출처원장 | 갑13 | 59,132,337 (원고 계산 오류) | 갑36-10 |
| | | | 거래원장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11 | ㈜시에라인터내셔널 | 84,969,500 | 거래명세표,견적서 | 갑14-1 | 84,419,500 | 갑36-11 |
| | | | 거래사실확인서 | 갑14-2 | | |
| | | | 전표조회 | 갑14-3 | | |
| | | | 거래사실확인서,세금계산서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12 | ㈜아이코넬 | 185,542,500 | 거래사실확인서,세금계산서 | 갑15-1내지4 | 185,542,500 | 갑36-12 |
| | | | 거래사실확인서 | 갑15-5 | |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 | | | | | | |
|---|---|---|---|---|---|---|
| | | | 전표조회 | 갑15-6 | | |
| | | | 거래사실확인서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13 | ㈜조일 | 97,378,336 |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 갑16-1,2 | 103,428,000 | 갑36-13 |
| | | | 거래사실확인서 | 갑16-3 | | |
| | | | 전표조회 | 갑16-4 | | |
| | | | 거래사실확인서,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14 | ㈜청담에너지 | 113,100,000 | 거래명세서 | 갑17-1 | 127,254,000 | 갑36-14 |
| | | | 거래처원장 | 갑17-2 | | |
| | | | 거래사실확인서,세금계산서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15 | ㈜현성교통기술원 | 65,000,000 | 용역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 갑18-1,2,3 | 51,500,000 | 갑36-15 |
| | | | 거래사실확인서 | 갑18-4 | | |
| | | | 전표조회 | 갑18-5 | | |
| | | | 거래사실확인,세금계산서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16 | ㈜호레카 | 24,321,000 | 거래처원장 | 갑19 | 24,321,000 | 갑36-16 |
| 17 | 법무법인 Ⅰ | 19,100,000 | 세금계산서 | 갑20 | 19,100,000 | 갑36-17 |
| 18 | 법무법인 J | 146,300,000 | 세금계산서 | 갑21-1내지10 | 124,300,000 | 갑36-18 |
| | | | 거래사실확인서 | 갑21-11 | | |
| | | | 전표조회 | 갑21-12 | | |
| | | | 전표조회 | 갑21-13 | | |
| | | | 거래처원장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19 | 광림구조이엔지㈜ | 29,700,000 | 세금계산서 | 갑22-1,2 | 29,700,000 | 갑36-19 |
| | | | 거래사실확인서 | 갑22-3 | | |
| | | | 전표조회 | 갑22-4 | | |
| | | | 거래사실확인서,거래처원장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20 | ㈜경신유앤엘 | 21,504,240 | 기간별거래보고 | 갑23-1 | 23,654,664 (부가가치세 포함) | 갑36-20 |
| | | | 거래사실확인서,기간별거래보고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21 | ㈜동원토질 | 3,300,000 | 세금계산서 | 갑24-1 | 3,300,000 | 갑36-21 |
| | | | 전표조회 | 갑24-2 | | |
| 22 | ㈜에이치디퍼니처 | 7,300,000 | 거래처원장 | 갑25 | 8,030,000 (부가가치세포함) | 갑36-22 |
| 23 | ㈜엔아이디자인 | 4,000,000 | 매출장 | 갑26 | 4,400,000 (부가가치세포함) | 갑36-23 |
| 24 | ㈜엘티네트워크 | 8,040,000 | 세금계산서 | 갑27-1 | 8,590,000 | 갑36-24 |
| | | | 거래처별수금 및 채권현황 | 갑27-2 | | |
| | | | 거래명세서,세금계 | 문서제출명 | |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 | | | | | | |
|---|---|---|---|---|---|---|
| | | | 산서,거래처별수금 및 채권현황 | 령회신 | | |
| 25 | ㈜케이티렌탈 (롯데렌탈) | 8,855,000 | 세금계산서 | 갑28 | 8,858,252 (연체금 포함) | 갑36-25 |
| | | | 전표조회 | 갑28-2 | | |
| | | | 청구수납내역,렌탈(임대차)계약서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26 | 강북신협 | 25,697,258 | 이자상환명세서 | 갑29-1 | 25,697,258 | |
| | | | 대출금 원리금 상환명세서 | 갑29-4 | | |
| | | | 대출 원리금 월별상황명세서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27 | 화곡신협 | 39,834,604 | 이자상환명세서 | 갑29-2 | 39,834,604 | |
| | | | 대출금 원리금 상환명세서 | 갑29-5 | | |
| | | | 대출금 원리금 상환명세서,보통대출금3원장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28 | 관악신협 | 39,534,244 | 이자상환명세서 | 갑29-3 | 39,534,244 | |
| | | | 대출금 원리금 상환명세서 | 갑29-6 | | |
| | | | 대출금 원리금 상환명세서,보통대출금6원장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29 | 국민은행 | 1,033,995,856 | 여신거래내역 | 갑30-1내지8 | 1,033,995,856 | |
| | | | 여신거래내역 | 갑31-4내지11 | | |
| | | | 여신거래내역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30 | 신용보증기금 | 147,010,670 | 입금영수증 | 갑31-1내지3 | 147,010,670 | |
| | | | 입금영수증 | 갑31-12내지14 | | |
| | | | 대출보증원장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31 | 한국전력공사 | 9,929,700 | 세금계산서 | 갑32-1 | 9,929,700 | 갑36-26 |
| | | | 납부금계산서 | 갑32-2 | | |
| | | | 전기사용신청접수,납부대상금액조회,진행상태조회 | 문서제출명령회신 | | |
| 32 | 서울상수도사업소 | 40,490,030 | 이체확인서 | 갑33 | 40,490,030 | 갑36-27 |
| 33 | 구로구청 | 198,594,640 (원고 수정금액) | 영수증 | 갑34-1내지9 | 198,594,640 | 갑36-28 |
| 34 | 법인 이외 거래 | 1,313,093,508 | | | | |

끝.